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청 주 시 장

1. 대출규모 : 20억원

2. 신청기간 : 2025. 1. 2. ~ 한도 소진시까지

3. 세부 추진내용

○ 사업명 : 청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1】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자금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 긴급생계자금 : 운영자금 등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운영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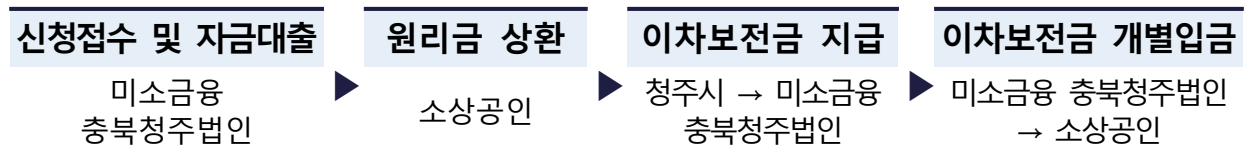
○ **지원제외**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대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업종, 신청자금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지원절차**



4. 유의사항

-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자금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 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상환 연체한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